# 농업・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(약칭: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)

[시행 2023. 4. 18.] [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0호, 2023. 4. 18., 일부개정]

농림축산식품부 (공익직불정책과) 044-201-1772, 1773

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

- 제2조(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) 「농업・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제1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업인등을 말한다. <개정 2021. 9. 30.>
  - 1.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・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
  - 2.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
  - 3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(이하 "기본직접지불금"이라 한다)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(이하 이 장에 서 "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"라 한다)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 지등(이하 이 장에서 "지급대상 농지등"이라 한다)에서 농업에 종사(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농업인등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. 다만,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5호에 따른 농 촌(이하 "농촌"이라 한다)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「농업・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 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(主業)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. 가. 농업인인 경우: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(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)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
    - 나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(이하 "농업법인"이라 한다)인 경우: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(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 다)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
  - 4.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(이하 이 장에서 "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"라 한 다)가 고령・질병 또는 부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농업에 종사(휴경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)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.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 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. 다만,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 락이 다음 연도부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. 가. 농촌에 주소를 둔 농업인

    - 나.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
  - 5.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(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)하는 농업인등. 이 경우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에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.

- 가. 농업인인 경우: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(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)이거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 의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
- 나. 농업법인인 경우: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(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)이거나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
- **제3조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)** ① 법 제9조제3항제3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.
  - 1. 매매・상속・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- 2.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- 3.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
  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**제4조(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)**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 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.
- 제5조(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) ①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 - 1. 농약안전사용기준: 「농약관리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
  - 2. 농약 잔류허용기준: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제6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「식품위생법」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·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
  - ②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 - 1.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: 농경지의 유기·무기물질 및 화학성분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
  - 2. 비료량 기준: 작물과 토양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정하는 비료량 기준
- 제6조(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・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(이하 "교육"이라 한다)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한다.
  -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,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이하 "시장 · 군수 · 구청장등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(이하 "교육 관리 시스템"이라 한다)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- **제7조(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)**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  -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,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.
- **제8조(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)** 영 제15조,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- **제9조(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)**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.

#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 • 등록 및 사후관리

- 제10조(등록신청의 공고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·공보·게시판·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(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「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의 게시판을 말하고, 일 간신문은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을 말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공고(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)의 기간은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,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야 한다.
- 제11조(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)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· 면장 또는 동장(이하 "읍 · 면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되,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가 같은 시 · 군 · 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 · 면 · 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· 면장에게 해야 한다. 다만, 법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(이하 "소농직접지불금"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의 구성원 중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다만, 읍·면장이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(이하 "농업경영정보"라 한다),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대장(農地臺帳) 또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.<개정 2022. 5. 18, 2023. 2. 9, 2023. 3. 21.>
  - 1.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
    - 가.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 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.
    - 1)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「농어촌정비법」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
    - 2)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「자연재해 대책법」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, 풍수해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
    - 나.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 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)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「농어촌정비법」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
- 2)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「자연재해 대책법」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, 풍수해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다.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, 종전의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라.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- 2.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
  - 가.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.
  - 나.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.
  - 다.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. 다만,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.
  - 라. 법 제9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
  - 마.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(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). 다만,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·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·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- 3.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
  - 가.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(이하 "관내경작자"라 한다)인 경우: 1)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
    - 1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(이하 이 장에서 "경작사실확인서"라 한다).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·통장의 확인과 농지등 소재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[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(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)을 말한다]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되,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제2조제 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·면·동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.
    - 2)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(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으로 한정한다)
    - 3) 농약・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(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한다)
    - 4) 종자・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(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한다)
    - 5)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
    - 6) 그 밖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
  - 나. 관내경작자 외의 자인 경우: 가목1)의 서류와 가목2)부터 6)까지의 서류 중 2개 이상의 서류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소농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영 제4조ㆍ제7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. 다만,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,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  - 가. 영 제4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
  - 나.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
  - 다.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  - 라.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 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  - 마.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및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 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
  - 바.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 액을 증명하는 서류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인이 직전 연도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.
- 1.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한 농지등 외에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없는 경우: 제2항제1호의 서류
- 2.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제2조제1호·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 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: 제2항제2호가목의 서류 중 제2조제1호·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- 3.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제2조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(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등록신청한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 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: 제2항제 2호가목의 서류 중 제2조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- 4.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: 영 제5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- 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제2항제3호의 서류
  - 가. 등록신청인과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의 주소지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
  - 나.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이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때에는 등록신청한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 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거나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관내경작자 외의 자로 등록한 이후 주소지를 등 록신청대상 농지등 소재지로 이동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
- 제12조(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·면·동에 두는 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"조사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・면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  - 1. 농지등 소재지의 읍 면 동 관할 통 리의 마을대표
  - 2. 해당 읍・면・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
  - 3. 해당 읍・면・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「농촌진흥법」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
  - 4. 해당 읍・면・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**제13조(조사위원회의 운영)**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
  - 2. 조사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
  - 3. 질병·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
  - 4.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-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,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③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④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 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.
- 제14조(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) ① 읍·면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.
  - ② 읍・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・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, 읍·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.
  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등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(이하 "등록거부 통보서"라 한다)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.
- 제15조(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)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・면장을 거쳐 시장・군수・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등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, 읍·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.
- **제16조(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)**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"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한다.
  - 1.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· 소재지 · 소유자 등 농지등
  - 2. 농지등의 자경(自耕)・임차(賃借)・휴경(休耕) 및 폐경(廢耕) 등 농업현황
  - 3. 농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재배현황
  - 4.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
  -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·면장을 거쳐 시장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·군수·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2. 5. 18.>
- 1. 발급받은 등록증
- 2.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3.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. 다만, 읍·면장이 농업경영정보,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.
  - 가.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
  - 나.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. 다만,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첨부해도 된다.
  - 다. 영 제7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, 읍·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.
- ④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양수(讓受)・임차 또는 사용차(使用借)를 신고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(이하 이 조에서 "변경신고서"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・면장을 거쳐 시장・군수・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2. 5. 18.>
- 1.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·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(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2.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3.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. 다만, 읍·면장이 농업경영정보,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.
- ⑤ 시장·군수·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, 읍·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.
-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.
- 제17조(조사계획의 수립·통보) 시장·군수·구청장등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·군·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다.
- 제18조(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) ① 시장・군수・구청장등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・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・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.
  -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,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.
- 제19조(서류의 보관·비치 의무)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·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.
  - 1. 발급받은 등록증
  - 2. 임대차계약서 및 경작사실확인서
  - 3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3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농산물 판매 영수증, 농약·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, 종자·육묘 등의 구매서류, 교육 이수증 등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·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
-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・비치해야 한다.
- 제20조(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)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  -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·징수절차에 관해서는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기재해야 한다.

#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

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

- 제21조(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) ① 영 제2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.<개정 2020. 12. 1.>
- 제22조(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) ① 시장・군수・구청장등은 제21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.
  - 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제23조(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)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4와 같다.

####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

- 제24조(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) ① 영 제30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<개정 2020. 12. 1.>
  - 1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제7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
  - 2.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
- 제25조(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)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.
  -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 14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**제26조(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)**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###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

- **제27조(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)** 영 제36조제3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한다.
  -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· 공업지역의 농지등
  - 2.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6조・제7조・제7조의2 ・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・일반산업단지・도시 첨단산업단지・농공단지의 농지등
  - 3.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등
  - 4.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등
- **제28조(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)**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 등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해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한다.
- 제29조(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(이하 이 절에서 "추진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1.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
  - 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영 제39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대상 마을대표 및 주민
  -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 -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,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30조(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)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·면장에게 제출해야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.
 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등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로 읍·면장,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31조(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)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6과 같다.

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<개정 2023. 3. 21.>

- **제32조(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)** 영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"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.
  - 1. 영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
  -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· 공업지역의 농지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6조・제7조・제7조의2・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・일반산업단지・도시첨 단산업단지・농공단지의 농지
- 4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
- 5. 「하천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농지
- 6.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

[제목개정 2023. 3. 21.]

- 제33조(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) 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 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
    - 가. 같은 시·군·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(연접한 다른 시·군·구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)를 경작하는 농업인
    - 나.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
    - 다.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·구에 두고 해당 시·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(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·군·구 중 연접한 읍·면·동 내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)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
 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인 경우
    - 가. 같은 시·군·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(연접한 다른 시·군·구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)를 경작하는 농업법인
    - 나.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
    - 다.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·구에 두고 해당 시·구에 소재한 1천제 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(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·군·구 중 연접한 읍·면·동 내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)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법인

[전문개정 2023. 3. 21.]

- 제34조(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)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·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  - ② 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다만, 읍 한 면장이 농업경영정보,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.<개정 2022. 5. 18., 2023. 2. 9., 2023. 3. 21.>
  - 1. 해당 농지가 영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
  - 2.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 - 3.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.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  - 4.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
  - 5.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[제목개정 2023. 3. 21.]

- 제35조(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읍·면·동에 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위원회(이하 "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"라고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  -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・면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3. 3. 21.>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농지 소재지의 읍 면 동 관할 통 리의 마을대표
- 2. 해당 읍・면・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
- 3. 해당 읍・면・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「농촌진흥법」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
- 4. 해당 읍・면・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
- ③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대표하고,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23. 3. 21.>
- ④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23. 3. 21.>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개정 2023. 3. 21.>

[제목개정 2023. 3. 21.]

- 제36조(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) ① 읍 · 면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 · 확인해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  - ② 읍·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·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3. 3. 21.> [제목개정 2023. 3. 21.]
- 제37조(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)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등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 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, 읍 · 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  [제목개정 2023. 3. 21.]
- 제38조(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)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  -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·임차 또는 사용차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·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읍·면장이 농업경영정보,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.<개정 2022. 5. 18., 2023. 3. 21.>
  - 1.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·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하는 서류
  - 2. 제34조제2항제2호・제3호・제5호의 서류
  - ③ 읍・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영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・군수・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·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변경등록을 하고, 읍·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.<개정 2023. 3. 21.>

[제목개정 2023, 3, 21.]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39조(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)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 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. <개정 2023. 3. 21.>

[제목개정 2023. 3. 21.]

#### 제5장 보칙

- 제40조(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)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,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및 시·군·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  - 1.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정보
    - 가. 기본직접지불금: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
    - 나.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: 영 제2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
    - 다.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: 영 제30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
    - 라. 경관보전직접지불금: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의 제출을 마감한 날
    - 마. 전략작물직접지불금: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
  - 2.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
    - 가. 기본직접지불금: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
    - 나.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: 영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
    - 다.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: 영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
    - 라. 경관보전직접지불금: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
    - 마. 전략작물직접지불금: 영 제4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
  -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(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)를 제공해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41조(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  -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,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42조(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)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(이하 "명예감시원"이라 한다)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- 1. 이장・통장 또는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
  - 2.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,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  -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・선정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지도・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・신고
  - 2.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43조(포상금의 지급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ㆍ제26조ㆍ제33조ㆍ제41조ㆍ제 5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선정ㆍ등록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한 자에게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  - 1.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
  - 2.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
  - 3.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·수사 중 인 경우
  - 4.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**제44조(우수사례에 대한 시상)**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
  - 2. 법 제17조에 따른 둥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
  - 3.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례

부칙 <제580호,2023, 4, 1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